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환경노동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EPR 품목에 의류 포함〉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50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EPR 품목에 의류 포함 .....  | 3 |

##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17일 김태선 의원이 제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 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

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제16조제1항 개정).

### Ⅲ. 주요 내용별 검토

#### 1. EPR 품목에 의류 포함

개정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 품목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의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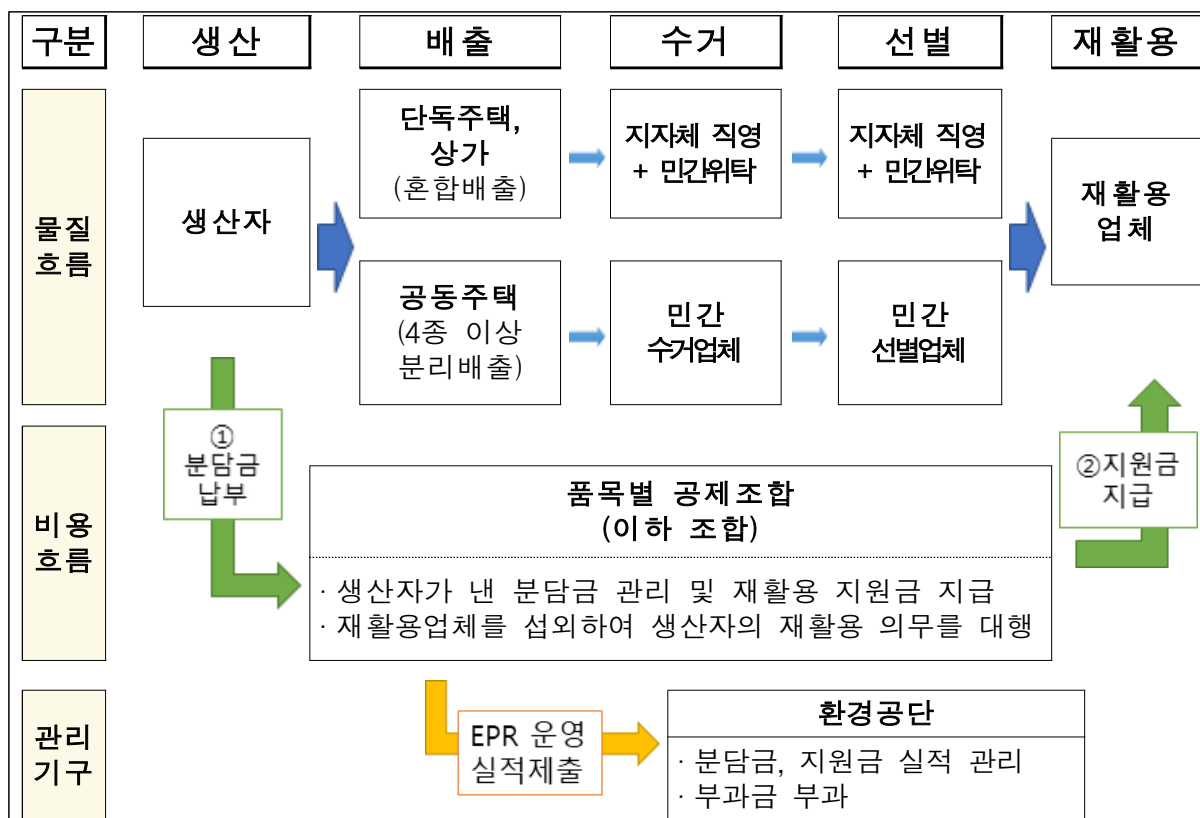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br>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br>-----<br>-----<br>-----<br>-----<br>----- <u>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u> -----<br>-----<br>-----<br>-----<br>-----<br>-----<br>-----<br>-----. |
|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 강화를 위하여 생산자가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을 원인자인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음.

대상 품목은 동법상 28종<sup>1)</sup>(포장재 4종, 제품24종)이고, 생산자가 품목별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조합에서는 재활용업체를 섭외하여 생산자의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생활계 재활용품 흐름도]



자료 : 환경부

1) \* (포장재) 합성수지 포장재(PET병, 단일재질, 복합재질 등),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 (제 품)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부자, 전지류, 곤포사일리지 필름, 김발장, 1회용 비닐 장갑, 산업용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안전망, 어망 등

개정안은 의류 기업에서 브랜드 가치 등을 이유로 재고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EPR 대상에 의류 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sup>2)</sup>

최근 유럽연합(EU)은 섬유(의류) 제품에 EPR 제도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순환 섬유 EU 전략」(2023) 등 국제적 규제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 자료에 따르면 EU 내에서 매년 520만 톤의 의류와 신발을 포함하여 1,26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지만, 이 중 재사용이나 재활용 목적으로 별도 수거되는 것은 2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매립·소각된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함.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추산한 2022년 기준 의류폐기물 양은 10만 8,434톤으로, 폐섬유 폐기물까지 합산할 경우 49만 5,249톤에 이르는데, 개정안에 따라 EPR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업자들에게 의류(섬유)의 재사용·재활용 노력을 촉진하고, 의류 중고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의류 순환 이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제적 규제 동향에 부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폐섬유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2022년)]

(톤/년)

| 연도   | 구분     | 발생량              | 처리        |           |          |         |
|------|--------|------------------|-----------|-----------|----------|---------|
|      |        |                  | 재 활용      | 소각        | 매립       | 기타      |
| 2020 | 소계     | 505,781.5        | 105,231.4 | 313,181.0 | 82,423.3 | 4,945.8 |
|      | 생활폐기물  | 397,747.3        | 48,516.2  | 265,154.8 | 80,606.5 | 3,469.8 |
|      | 사업장폐기물 | 108,034.2        | 56,715.2  | 48,026.2  | 1,816.8  | 1,476.0 |
| 2021 | 소계     | 540,691.3        | 326,970.9 | 326,970.9 | 93,153.4 | 5,688.0 |
|      | 생활폐기물  | 411,704.3        | 58,415.9  | 270,274.2 | 80,823.6 | 2,190.6 |
|      | 사업장폐기물 | 128,987.0        | 56,463.0  | 56,696.7  | 12,329.8 | 3,497.4 |
| 2022 | 소계     | <b>495,249.9</b> | 112,939.4 | 305,761.7 | 70,768.4 | 5,780.3 |
|      | 생활폐기물  | 381,077.0        | 61,015.2  | 251,418.8 | 65,777.2 | 2,865.8 |
|      | 사업장폐기물 | 114,172.9        | 51,924.2  | 54,342.9  | 4,991.2  | 2,914.5 |

[ 폐섬유류 내 폐의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20~2022년) ]

(톤/년)

| 연도   | 구분     | 발생량              | 처리                      |         |    |       |
|------|--------|------------------|-------------------------|---------|----|-------|
|      |        |                  | 재 활용                    | 소각      | 매립 | 기타    |
| 2020 | 소계     | 86,050.7         | 84,513.6                | 1,376.6 | -  | 160.5 |
|      | 생활폐기물  | 82,422.7         | 82,422.7                | -       | -  | -     |
|      | 사업장폐기물 | 3,628.0          | 2,090.9                 | 1,376.6 | -  | 160.5 |
| 2021 | 소계     | 120,481.6        | 119,382.3               | 1,071.4 | -  | 27.9  |
|      | 생활폐기물  | 118,386.3        | 118,386.3               | -       | -  | -     |
|      | 사업장폐기물 | 2,095.3          | 996.0                   | 1,071.4 | -  | 27.9  |
| 2022 | 소계     | <b>108,434.2</b> | 107,237.7               | 908.2   | -  | 288.2 |
|      | 생활폐기물  | 106,536.3        | 106,536.3 <sup>3)</sup> | -       | -  | -     |
|      | 사업장폐기물 | 1,897.9          | 701.4                   | 908.2   | -  | 288.2 |

3) 폐의류 중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달리 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소각·매립 등 통계가 부재하며, 전량 재활용으로 집계됨

또한, EPR 대상이 될 경우 의류 생산자는 연도별로 제품의 출고량·재활용량 등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게 되어(제16조 제6항4)), 의류 재활용·폐기량 통계의 정확성이 제고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다만,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섬유패션업계의 88%가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인 점, 국내 의류 재활용체계 구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의류의 EPR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재활용체계는 수거-선별(전처리)-재활용의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우선 ① 수거·선별 단계에서 폐의류가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재질별(합성섬유/천연섬유 등)로 자동 분리하는 선별 기술<sup>5)</sup>이 필요하고, ② 재활용 단계에서 일부 폐의류는 흡음재·충전재·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나, 열분해·해중합 방식은 기술개발 단계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아 전체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sup>6)</sup>

참고로, 의류, 섬유에 대해 선구적으로 EPR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물리·화학적 재활용보다는 재고품의 소각·매립 금지와 소비자에게 의류 제품 수리비 지원 등과 같은 ‘재사용’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⑥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해외 일부 업체가 개발하여 판매 중이나 국내 설비는 개발되지 않았으며, 국내 재활용업체도 해외 설비를 도입한 곳이 없음(환경부)

6) 환경부, 「품목별 재활용제도 개선방안 연구」(2023.9.)

## [국외 섬유 및 의류 EPR 제도 도입 운영 및 도입 현황]

| 구분              | 프랑스                                                                                                                                                                   | 스웨덴                                                                                                                                  | 네덜란드                                                                                                                                             |
|-----------------|-----------------------------------------------------------------------------------------------------------------------------------------------------------------------|--------------------------------------------------------------------------------------------------------------------------------------|--------------------------------------------------------------------------------------------------------------------------------------------------|
| EU 공통사항         | EU회원국은 자국 내 별도 규정에 따라 2025년까지 의류, 섬유 폐기물 수거 시스템 구축 의무 부여                                                                                                              |                                                                                                                                      |                                                                                                                                                  |
| EPR제도 도입유무      | ○                                                                                                                                                                     | △                                                                                                                                    | △                                                                                                                                                |
| EPR제도 도입시기 (예정) | 2007년 도입<br>2023년 범위확장                                                                                                                                                | 2024.1.1.부터<br>단계적 실시                                                                                                                | 2023.7.1                                                                                                                                         |
| 대상 품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용 섬유제품</li> <li>의류, 신발</li> <li>개인용 가정용린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류</li> <li>가정용 직물</li> <li>가방 및 악세사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류(셔츠,스웨터,바지등)</li> <li>침구(이불커버,시트 등)</li> <li>테이블린넨 (식탁보등)</li> <li>가정용린넨 (수건, 티타월등)</li> </ul>          |
| 생산자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내 EPR 대상 제품 제조, 자국내 판매</li> <li>EPR 대상 제국을 자국에 수입</li> <li>자체 브랜드나 이름으로 판매하는 상품</li> <li>전자상거래 업체</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 시장에 직물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자국내 설립 기업</li> <li>자국에 설립되지 않았으며 가정에 직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기업</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국 내 의류, 섬유 제품 판매하는 패션 및 의류산업의 모든 생산자/수입자</li> </ul>                                                      |
| 생산자 책임기구        | Refashion                                                                                                                                                             | 미설립                                                                                                                                  | Stching UPV textile                                                                                                                              |
| 생산자 책임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 선별, 폐기물 처리 관련 비용 부담</li> <li>자체수집 및 수집 재활용 프로그램 설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유제품 생산량 등 자료보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섬유 수거, 폐기물 단계, 재활용에 대한 책임, 비용 부담</li> <li>섬유 판매 재활용 및 재사용 자료 보고</li> </ul>                                |
| 재활용 방법 및 주요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에게 제품 수리비 지원 (2023.10)</li> <li>에코디자인, 재고제품 폐기금지, 제품 수명 연장이 EPR 주요 내용</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사용</li> <li>일부 기업의 자체 중고의류 거래 플랫폼 운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사용</li> <li>섬유 폐기물 수집, 수거를 위한 시스템 개발 중</li> </ul>                                                        |
| 목표              | <p>&lt;전체섬유(TLC) 재활용 목표&gt;<br/>-수집량의 최소재활용비율 : 24년 70%, 27년 80%</p> <p>&lt;합성플라스틱 포함 섬유 재활용 목표&gt;<br/>- 최소 90% 합성플라스틱 섬유를 포함하는 수량의 최소 재활용 비율 : 25년 50%, 28년 90%</p> | <p>&lt;매립/소각되는 섬유 폐기물 양 감축(22년 대비)&gt;<br/>- 28년 : 70% 감축<br/>- 32년 : 80% 감축<br/>- 36년 : 90% 감축</p>                                  | <p>-섬유제품 *50%(75%)</p> <p>재사용/재활용<br/>-시장출시 섬유제품 *10%(15%)<br/>자국 내 재활용<br/>-재활용 섬유 *25%(33%)<br/>Fiber to Fiber로 활용</p> <p>*25년 목표 (30년 목표)</p> |

자료 : 환경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류 산업이 매우 영세하여 재활용 생산 기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이 선행된 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46 |